

## 지반굴착분야에서의 사고발생시 법률적 대응방안

### Domestic Law and Legal Countermeasures for Ground Excavation related Accidents

이상호<sup>1)</sup>, Sangho Lee, 나승민<sup>2)</sup>, Seungmin La

<sup>1)</sup> 법무법인 재유 변호사, Attorney at Law, Jaeyoo Law Firm

<sup>2)</sup>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강구조연구소 책임연구원, Senior Researcher, RIST

**SYNOPSIS** : Accidents during ground excavation and temporary or permanent structure construction have always occurred regardless of how much technology improved. Many causes can be derived from various cases and technical revision has always been a matter of interest to the geotechnicians. But the legal procedures that follow the construction accidents have scarcely been studied by the geotechnical society even though it influences most on the everyday lives of the parties of interest. In this respect, this paper describes the current judicial system, law and legal practices for ground excavation related accidents along with several case studies on judicial precedents and presents methods that should be taken to improve the current judicial system.

**Keywords** : Ground excavation accidents, judicial system, domestic law

## 1. 서론

지반굴착과 관련하여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특성상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의 개연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관련법령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지반굴착과 관련된 붕괴사고는 법학적으로는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행법상 다양한 법령이 적용된다. 즉 건설관계법령을 보면, 건설기술관계법령으로는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이 적용되고, 건설정책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이 적용되며, 노무관계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관련된다.

또한 지반굴착분야에서의 붕괴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건축주, 건설업자, 건축기사, 감리전문회사나 감리원 등의 다양한 건설관계인이 관계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건설관계 법령이 정하는 각종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형벌이라는 제재수단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건설관계법령에서 건축행위나 건설공사를 엄격히 규제하여 부실공사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고 있으나, 매년 계속되는 붕괴사고를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관계법령은 건축허가제도를 기본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감리제도를 도입하여 건축공사의 착공부터 완공 후 사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에 의해 규율하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행건설법령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두고는 있으나 매년 계속되는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법령상의 각종 규제제도가 현실성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반면에 이에 대한 규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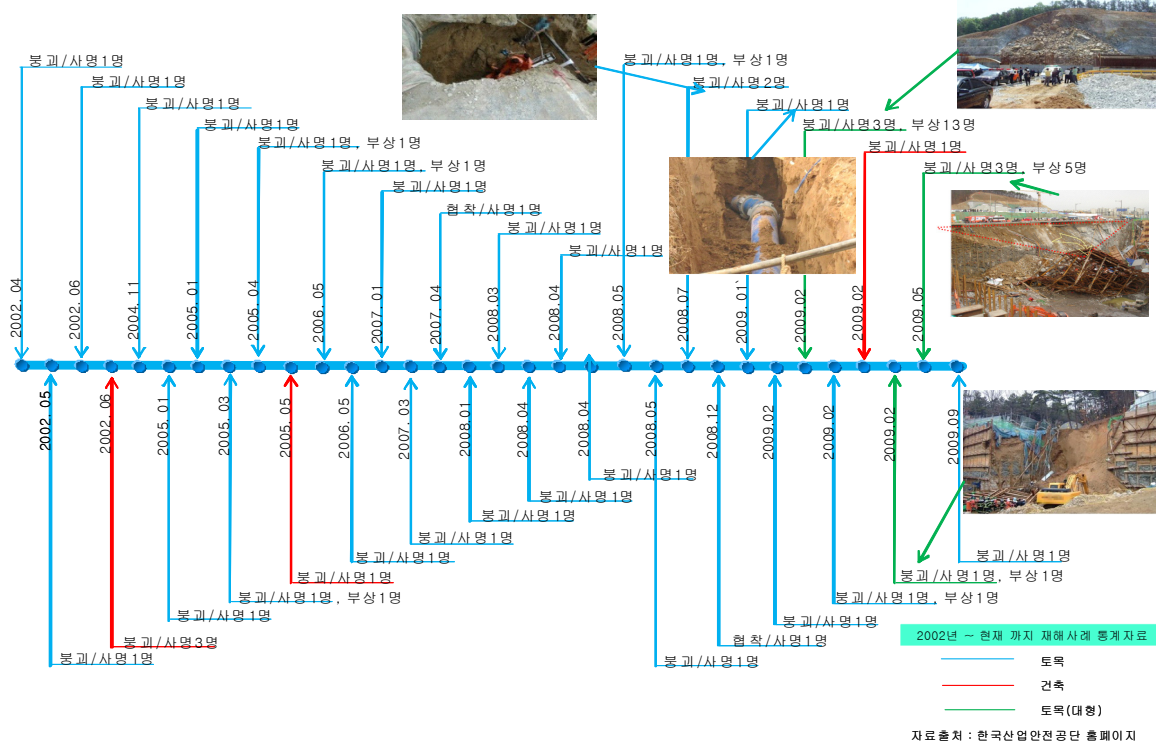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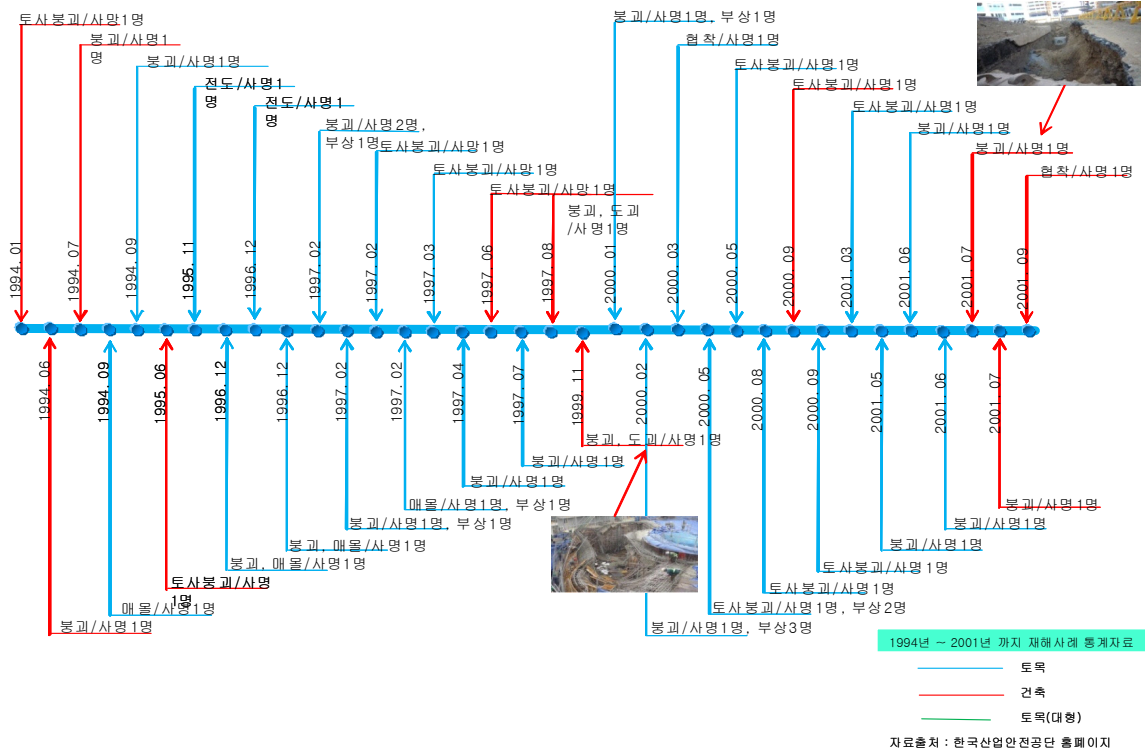


그림 1. 1994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반굴착 관련 붕괴 사례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 2. 붕괴사고의 유형

지반굴착과 관련된 붕괴사고는 건축과 토목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규모를 기준으로서는 대형과 소형 붕괴사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대형과 소형 붕괴사고의 구분은 그 기준이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험칙에 의한 구분으로 대형붕괴 사고의 경우 그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

적 피해가 광범위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있다.

예컨대 2009년도에 발생한 대형붕괴사고를 보면 2009. 2월에 깊이 22m의 지반 굴착공사 중 에스 앵커 지지형식의 흙막이 벽체가 붕괴되면서, 근접 설치된 철골작업대(복공판)가 붕괴되어 철골작업대 상·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하였고, 2009. 5월에는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개착식 터널구간 측면부의 절취사면 일부구간이 붕괴되면서 하부에서 구조물 철근 및 거푸집 조립작업 중이던 피해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대형붕괴사고는 대규모의 인명피해로 연결될 개연성을 항시 내재하고 있다.

### **3. 붕괴사고에 대한 법적 문제점**

#### **3.1 행정적 조치**

지반굴착과 관련하여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때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영업정지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때 건설업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3.2 손해배상 책임**

지반굴착 등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와 일반 민간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적용법령에 차이가 있다.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일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책임과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책임요건을 보면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건설업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3.3 산재보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근로자가 지반굴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사망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다. 양자의 관계는 산재보험가입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제된다.

#### **3.4 형사책임**

지반굴착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 및 건설관련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즉 형법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계·시공·공사감리 규정을 위반한 부실공사나 착공 후 중대한 손괴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재해발생의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4. 주요 판례 검토

### 4.1 뉴코아 백화점 신축 터파기 공사

#### (1) 사안의 개요

뉴코아백화점 신축시 지하 28.8m까지 수직으로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공사 중 인근건물 외벽과 4m지점까지 굴착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인근건물과 지하타워의 균열이 야기되었다. 하수급인은 지하수위(5.4m)보다 깊은 28.8m까지 굴착을 하면서 S.C.W공법으로 차수막을 설치하고 굴착면을 따라 H파일을 밖았으며 사이에 토류벽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침하되고 무리한 수평력작용으로 인근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 (2) 판결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법원은 조잡한 시공은 고의 또는 과실과 동일한 개념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0. 9. 22 99나 50318판결 참조) 대법원은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6. 12 2000다58859판결 참조)고 하면서 위 사안에서 ① 차수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가 유출되게 하였고, ② 설계도서대로 터파기 공사를 충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토압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 사건 건물에 수평력이 가해지게 하였으며, ③ 공사 도중 토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방지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사를 조잡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4.2 육교해체/철거 작업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1) 사안의 개요

계룡육교 철거 공사시 강교빔 12개 사이에 설치된 X형 브레싱을 산소용접기로 절단, 해체를 하는 작업 중 강교빔 4개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도괴하였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 (2) 판결결과

2심은 열차진동 등의 주변상황을 감안한 세부해체계획을 세우지 않은 잘못이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부령에서 강교빔을 크레인에 결속시키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을 근거로 건설회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대전지법 2007. 8. 24. 선고 2006노1920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육교는 2005년부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노후화된 교량으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인 피고인의 피용자는 해체건조물인 위 육교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해체건조물의 붕괴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해체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되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해체계획을 세우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 8.11. 선고 2007도7987판결).

### 4.3 취수장 취수문 수해복구 사건

#### (1) 사안의 개요

2007. 8.경 남양주 취수문 수해복구 공사 진행 중 사전에 굴착된 9.7m 아래 추진구(압입굴착작업을 위한 7m X 10m)지반에 50~60cm 압입된 추진관(강관, 직경 1m)내부의 토사분출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검사는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실시로 수급인인 회사, 현장소장, 하수급인인 대표이사를 기소하였다.

#### (2) 판결결과

1심은 하나의 사업자가 공사전부를 수급받은 경우 도급인은 산업안전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도급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고, 또한 도급회사의 현장소장도 사업주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의정부 지방법원 2009. 2. 12. 2008고정1203판결).

### 4.4 붕괴사고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범위

대형사고의 붕괴원인은 건축계획의 수립, 설계, 공사공정, 유지관리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붕괴사고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대형사고의 건설에 있어서는 많은 공사담당자가 관련되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형사처벌을 받는지도 실무상 문제된다. 대표적인 대형사고인 삼풍붕괴사고에서는 각 단계별 관련자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파악하여 구조계산 담당, 설계 및 감리담당, 현장소장, 건축기사, 대표이사, 설비부장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았고(대법원 1996. 8. 23. 96도1231판결),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는 교량건설회사 트러스 제작 책임자, 현장감독, 발주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대법원 1997. 11. 28. 97도1741판결). 그리고 붕괴사고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피해자들이 사망이나 상해를 입은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하였다.

## 5. 결론

지반굴착분야에서의 붕괴사고시 특히 대형붕괴사고는 그 원인이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 발생할 뿐 아니라 원인규명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붕괴사고의 특성에 의해 소송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실제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분쟁이 종결되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실제 붕괴의 원인을 모두 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붕괴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판례는 사실상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건설관련자들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건설관계법령에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분명한 개념인 조잡한 시공이라는 개념을 건설기본관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의 중심개념으로 규율하고 있는 등 관련법령의 정비와 개선을 위해 법률가와 건설실무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반면에 형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건설담당자에게 부과한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될 뿐 아니라 계룡육교 철거 작업 중 강교빔이 도괴하여 발생한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규정에서 부과된 의무 이외에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되는 공법에 의해 철거작업을 하도록 해체계획을 세워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관계법령은 건설공사 도중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이외에 행정적, 형사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굴착공사시 세부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입법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석종현 (1996), 부실공사의 법률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2. 윤재운 (2008), 건설분쟁 관계법-건설분쟁의 법적 쟁점과 소송 실무, 박영사